

"정신대진상 철저히 규명돼야"

본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 박원순씨 22일 버클리서 강연
"정신대 하수인들 국내법정에 세워 반드시 처벌" 강조

65년 체결된 잘못된 한일협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박변호사는 정신대 문제는 국제법상 체약 당사자의 자유제한과 강제구속 상태에서 행해진 모든 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근본규범」의 국제법 적용으로써 정신대 희생자들의 배상청구권을 포기케 하는 잘못된 한일협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장에는 한국 고문희생자원회회 서승씨를 비롯하여 70여명의 학생, 일반인들이 참석, 3시간동안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등 진지한 분위기로써 진행됐다.

신대 희생자들의 오랜 고통과 치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인류에 대해 잔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국제 인권법과 나치스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유령전법재판 선례에 기초하여 정신대 하수인들을 우리나라 법정에 반드시 세워야 함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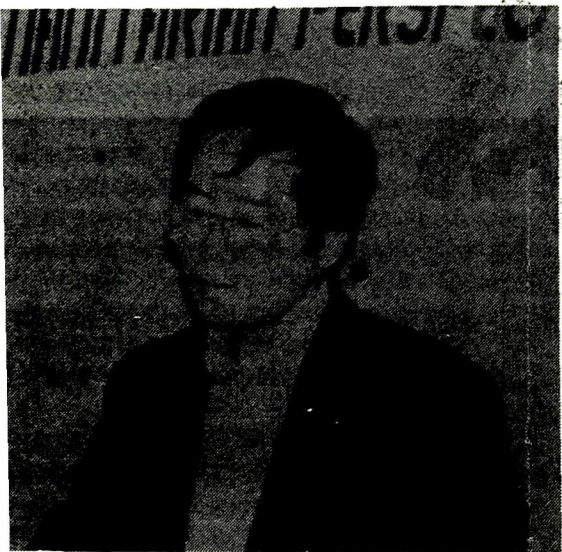
현재 하버드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서 미주한인사회의 변호사 모임을

주도하는등 한국 인권문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변호사는 정신대 문제를 대함에 있어 특히 한탄스러운 것은 정신대문제가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극악한 비극이었으며 민족보존과 번성의 태반이 되는 조선여성을 대량 징집, 일본군대의 육정충족에 조달함으로써 조선민족을 확대하고

인간성을 유린하는 잔혹한 범죄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들 희생자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일제에 의하여 동원된 정신대 규모를 10만에서 20만까지 추산하고 있는 박변호사는 이는 당시 전체인구중 한국 소녀인구 비율의 상당한 정도가 되며 이는 희생자 개인 또는 집단의 강간 행위 차원을 넘어 이미 민족말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써 국내법상 형법적 강간개념의 차원을 넘어 국제법상 제노사이드범죄로 규정하여 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밝혀진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가 최근까지 제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해방후부터 근대까지 국내상황이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성을 억압하는 독재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었으며 또한 법률상으로는 전쟁 피해보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



▲정신대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을 설명하는 박원순 변호사. <이명수 기자>

한국 고문피해자의 상이 된 서승씨를 석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등 본국의 대표적인 박원순변호사가 지난 일 오후 UC버클리내 위넵 홀에서 정신대문의 본질과 해결방안을 토하는 강연회를 가졌

다.
한국고문희생자원회회, 북가주청년여성동아리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는 「국제 인권법으로 본 정신대」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천인공노할 전쟁범죄 때문에 발생한 정